

1. 개정이유

법 시행규칙 별표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그 적용범위를 다르게 정하고 있고, 이때 사업의 종류는 통계청 고시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있음

현재는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고 있으나, '24.7.1.부터는 제11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시행될 예정으로, 변경된 산업분류내용을 반영하여 법 시행규칙 별표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산업안전·보건지도사가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는 경우 법인과 구분할 수 있도록 별도 서식을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신설(법 시행규칙 별표 2 제5호 신설)

- 1)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정보서비스업’에 해당되던 일부 산업활동[인터넷(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음악 및 오디오물 스트리밍 서비스 등]이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새롭게 신설된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으로 산업분류가 변경됨

- 2) 다만,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의 운영실태, 인력구성 및 유해위험요인 등이 ‘정보서비스업’과 유사하므로,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보서비스업’에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을 추가·신설하여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산업분류가 변경된 업종의 법 적용 범위를 현재

와 동일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음

나.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전문기관 지정 관련 서식 개정(법 시행규칙 제16조, 제90조,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은 산업 안전·보건지도사를 법인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별도 서식을 신설 하고 현행 서식의 제목을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란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사업의 종류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제목 “지정신청서”를 “지정신청서(법인 등)”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제1호 중 “정관(지도사인 경우에는 제229조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을 “정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제목 “지정서”를 “지정서(법인 등)”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제목 “변경신청서”를 “변경신청서(법인 등)”로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및 별지 제8호의2서식을 각각 별
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정신청서(지도사)

[] 안전관리전문기관

[] 보건관리전문기관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지도사 성명			
	업무지역			
	사업체	상호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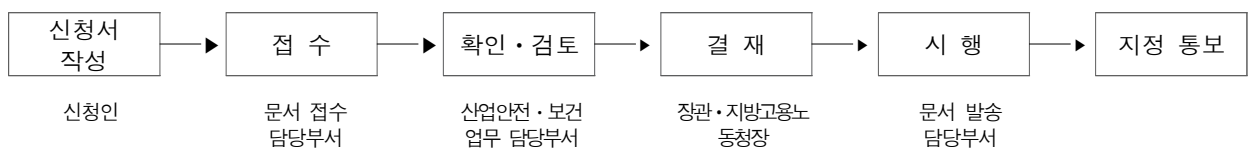
고용노동부장관 · 지방고용노동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제229조제2항에 따른 등록증 사본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 명세서 3.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제외)	수수료 없음
-------------	--	-----------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 호

() 지정서(지도사)

성명		
사업체	상호명	
	소재지	
	대표자	
지정사항		총 업무(지정) 한계 사업장 ()개소, 근로자 ()명
		관할지역 업무(지정)한계 사업장 ()개소, 근로자 ()명
		업무(지정) 지역

※ 준수사항

1.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자료 제출 요구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3. 그 밖의 사항

※ “지정사항” 및 “준수사항”에는 지정기관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적거나 필요 없는 사항은 삭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에 따라 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지방고용노동청장

직인

변경신청서(지도사)

[] 안전관리전문기관

[] 보건관리전문기관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0일
------	------	------	------	-----

신청인	지도사 성명			
	업무지역			
	사업체	상호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발생일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사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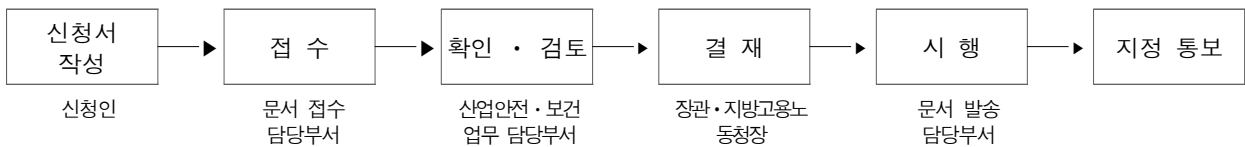
고용노동부장관 · 지방고용노동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지정서 원본	수수료 없음
------	--------------------------------	-----------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 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안전관 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 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u>별 지 제6호서식</u> 의 안전관리·보 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 부장관(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한정한다) 또는 업 무를 수행하려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 동청장(안전관리전문기관 및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역별 보 건관리전문기관에 한정한다)에 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16조(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 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 ----- ----- <u>별</u> <u>지 제6호서식</u> 또는 <u>별지 제6호</u> <u>의2서식</u> ----- ----- ----- ----- ----- ----- ----- ----- ----- ----- -----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 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 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 전문기관 지정신청서가 접수되	③ ----- ----- ----- -----

면 최초 1년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생략)

⑤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지정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생략)

제9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

④ (현행과 같음)

⑤ -----

-----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의2서식-----

-----.

⑥ (현행과 같음)

제9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

-----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

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영제61조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검토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u>별지 제7호 서식</u>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⑤ (생략)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u>별지 제7호 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u>-----. ④·⑤ (현행과 같음)
---	--